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1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 박해철 · 민병덕 · 김성회

허성무 • 이수진 • 조계원

양부남 • 문대림 • 정진욱

노종면 • 백승아 • 민형배

정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927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임.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우리사회는 1년에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명목으로 주 69시간제 도입을 시 도하고 있음.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2주간 60시간, 4주간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결국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하다 죽게하겠

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

노동시간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EU 등 많은 국가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압축노동을 근절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등의 산업재해로부터 국민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음.

우리 사회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 호하고,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과로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로사 등의 발생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과로사 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임.

이에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 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적극적 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여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 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 생으로 인한 사망·자살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과 상호협력하여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민간은 이러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제5조).
- 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목표·기 본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정한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 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매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

- 등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등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로사와 그 주요 원인이 되는 장시간 근로 및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로사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인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사망(자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이하 "과로성 질환"이라 한다)의 발생
 - 2. 기존 질환의 자연속도 이상의 악화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체적 장해 또는 정신적 장해의 발생 제3조(기본원칙) 이 법은 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이하 "과로사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과로사등을 효과

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기본 원칙에 따라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대책(이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사업자·국민과 상호 협력하고 정보의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국민과 사업자는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 과로사등 예방 대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로사등의 예방과 그에 관한 대책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목표 ·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3.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4. 과로사등 위험집단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5. 과로사등 실태조사 및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6. 과로사등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 7. 그 밖에 과로사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1조에 따른 과로사등 예방 대책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과로사등 예방 대책

- 제9조(과로사등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의 발생규모 와 추세를 파악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하여 매년 과로사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 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로사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실태조사의 시기, 내용,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조사·연구 등) ① 정부는 과로사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근로조건·작업환 경·조직구조·조직문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과로사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과로사등 예방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 조정 및 근로자·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한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등 예방 대책 추진협의회(이하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 ②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한다.
 - ③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 3. 그 밖에 과로사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 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과로사등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에게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여 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 상담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국회에 대한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과로사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